

이 보도자료는 2022. 10. 3. (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2. 10. 3.(월)

자료문의 : 노동수사지원과

전화번호 : 535-4679

주책임자 : 노동수사지원과장

제 목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개 요

- 대검찰청은 근로자들이 임금·퇴직금(이하 임금)을 제때, 전액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대책을 마련하였음
- ①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여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 체불로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 ②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속히 수사하고, 악의적·상습적 범행일 경우 정식재판 적극 청구
- ③ 근로자와 사업주간 체불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위해 △ 전문적 형사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 △ 당사자 편의를 도모하는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 확대

1] 최근 임금체불 현황

- 2020년 이후 체불금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도 1조3,505억원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

<체불임금 발생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단위 : 억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체불액	12,993	14,286	13,811	16,472	17,217	15,830	13,505

② 체불유형에 따른 대책

체불 유형	대책
지급능력 있음에도 상습적·고액 미지급	→ 구속수사 등 엄정대처
소액이라도 상습적 미지급	→ 적극적 구공판
당사자 간 감정악화·오해에 따른 미지급	→ 형사조정제도 개선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 국가지원제도 안내

③ 구체적 개선방안

① 체불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관계 조사 강화

- (개선방안) 어느 유형의 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과정 (노동청, 검찰)에서 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 동산, 예금 등) 조사를 강화하여 재산 유무, 고의 미지급 여부 등 확인
 -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 ※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은 매년 1,500여건 이상 계속 유지됨에도 구속 인원은 감소 추세(별첨1,2 통계 참조)
 -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 확인되면 양형요소에 반영
- (기대효과) 체불유형 확인, 맞춤형 대응을 통하여 임금 지급 가능성 제고

② 출석거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 (개선방안) 체불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 청구 등으로 신속 수사
 - ※ 소액 체불이라는 이유로 지명통보 기소중지를 반복할 경우 임금 체불은 청산되지 않고,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
 - ※ 임금 체불사건 지명통보 비율은 지속적 증가 추세(별첨3 통계 참조)
- (기대효과) 신속한 수사절차 진행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 가능성 제고

③ 구공판 적극 청구

- (개선방안)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체불이라도 적극 구공판
- (기대효과) 소액이라도 악의적 체불시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체불청산, 형사처벌을 면할 기회 제공
 - ※ 체불임금 청산 후 당사자간 합의시 피고인인 사업주는 공소기각 판결

④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운영

- (개선방안)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내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운영
 - ① 합리적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②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③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시 공증 절차 안내 등
- (기대효과) 주요 체불 사유의 하나인 당사자간 감정악화와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형편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 제시, 법적 구제절차 설명
 - ※ '21. 12.부터 울산지검에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체불사건 형사조정팀」을 설치·운영한 결과, 조정 성립률 상승(33.3% ⇒ 45.5%)

⑤ 야간·휴일·출장(현장) 형사조정 확대

- (개선방안) 생업중사, 원거리, 고령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① 야간 또는 휴일 조정, ② 출장 조정 확대 실시
 - ※ 검찰청이 없는 원거리 지자체·공공기관 사무실에서 형사조정 실시, 주민 편의 제고(관할이 넓은 검찰청의 경우 관내 군청까지 1시간30분 소요)
 - ※ 일부청에서 야간(부산동부지청), 휴일(청주지검, 여주지청), 출장(순천·의성·해남지청)조정 시행 중인바, 청별 사정에 따라 확대방안 마련
- (기대효과) 조정 참석률을 높여 당사자 직접 대면을 통한 감정 해소와 임금 지급으로 종국적 사건 해결 가능성 제고

4 향후 계획

- 대검찰청은 전국 청의 체불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업무에 반영하는 등 이번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

(별첨1)

체불금액별 사건 수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체불금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천만원~5천만원	6,276	6,880	6,779	8,046	9,759	9,561	8,421
5천만원~1억원	2,113	2,183	2,141	2,480	2,947	2,858	2,368
1억원~3억원	1,283	1,374	1,278	1,519	1,583	1,479	1,276
3억원 이상	365	414	383	398	411	344	308

(별첨2)

임금 체불자 구속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입건자 (구속자)	57,917 (17)	60,143 (22)	61,356 (28)	62,714 (12)	63,129 (18)	51,571 (5)	39,544 (6)	20,950 (3)

(별첨3)

임금 등 체불 사건 기소중지 송치 현황

(출처 : 고용노동부)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명수배 송치 (체불금액)	952건 (84억원)	829건 (67억원)	720건 (88억원)	518건 (78억원)	330건 (45억원)
지명통보 송치 (체불금액)	5,607건 (353억원)	5,966건 (430억)	5,640건 (429억원)	4,294건 (344억원)	3,441건 (270억원)
합계	6,559건 (437억원)	6,795건 (497억원)	6,360건 (517억원)	4,812건 (422억원)	3,771건 (315억원)